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1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16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6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0. 2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예상되는 중수도 설치와 관련 조례정비와 아울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 등 상수도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대형건축물 증가 및 실내수영장 신설 등에 대비하여 중수도시설 정의 신설(안 제2조제6항)
- 나. 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의 급수공사의 승인조항 신설(안 제6조의3, 4항)
- 다. 급수공사 자재의 인증규정(안 제7조제2항)
- 라. 사용료 규정을 사용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변경하고 사용료 현실화 (안 제26조)
- 마. 업종의 구분 중 높은 요율의 적용규정 세분화(안 제2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물 값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물 값을 인상함에 따라 고성군이 공급받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에서 사용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변경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물 소비절약 생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

- 또한 대형건축물 증가 및 고성군실내수영장 신설계획에 대비하여 중수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합건물에서 수도급수 용도 구분을 가정용, 영업용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 군민의 생활의 불편 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.
-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다만, 별표 2에서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의 내용이 재반현실 여건과 고성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24조제2항의 “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로 개정하는 사유는
- 답 : 급수중지와 폐전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게 되면 공무집행과 유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.
- 문 : 작년에도 인상된 수도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
- 답 : 가정용으로 10톤미만 기본요금을 적용 받는 가구수가 우리 군에 1,090가구로서 약 51%정도 되므로 어렵게 살고있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종전보다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임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